

윤리실천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윤리실천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스 카이라이프(이하“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에 관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준수의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회사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제4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아래 각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규정 중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를 제외한 금품등을 수수 및 제공하는 행위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의 접대·향응을 수수 및 제공하는 행위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규정 중 제6호(공식적인 행사 등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담보 수수 및 제공, 지분의 인수 또는 매매(공개시장을 통한 인수 또는 매매의 경우는 제외)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사의 관계직원과 금전 또는 부동산, 지분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품등'의 가액범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아래 각 호에 따른 금품을 말한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 이하로 한다.
1. 음식물 : 제공자와 수수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으로 가액범위는 3만원 이하로 한다
 2. 선 물 : 금전 및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가액범위는 5만원 이하로 한다.
 3.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로 한다.
단 경조사비와 음식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10만원 이하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는다.
1.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해제·해지하고 회사의 불성실업체관리지침에 의한 불성실업체로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협력사 등록을 취소 또는 협력사 지위를 상실한다.
 2.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부분 거래물량 또는 거래규모를 제한하거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해 12개월 이내의 지위정지 조치 혹은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부득이한 사정과 계약 상대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재산상의 이득 가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금품 등,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담보 수수 및 제공, 지분의 인수 또는 매매(공개시장을 통한 인수 또는 매매의 경우는 제외)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의 이득 가액'은 횡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⑦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비위 관련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비위 관련자가 타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⑨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제8항의 타회사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제(해지) 및 협력사 등록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사 의무) 협력사에 금품수수, 불법 하도급 등 협력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혐의가 발생하여, 사안의 조사를 위해 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윤리경영부서)가 요구할 경우 조사 협조 및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관련자료 (회계장부 등)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사 협조나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① 1차 거부시: 조사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할 때까지 입찰참가 제한
- ② 2차 거부시: 협력사 지위상실 또는 무기한 입찰자격 제한

제6조(기타사항) 본 특별약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회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본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